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226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유병연,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3. 17

판결 선고 2021. 4.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8165사건으로 지급명령 을 신청하였고, 위법원은 2015. 1. 27. ' C는 원고에게 24, 903, 683원 및 그중13,653,277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는 2015. 3. 3. 확정되었다.

나. 망 D은 2018. 9. 21. 사망하였고,그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자녀인 C (법정상속분 2/11), E, F, G이 있었다.

다. 망 D의 법정상속인들인 피고,C, E, F, G은 2019. 1.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C는 2019. 1. 10.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장, H기관장,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분인 2/11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D과 '연생 일하여 만든 보금자리이고,C는이미 망 D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가면서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박민규

별지